인권/양성평등에관한규정 4-3-9

규정번호 4-3-9
제정일자 2007.7.1
최근개정 2026.2.6
개정차수 13차 개정
관리부서 인권/양성평등센터

[규정명칭 변경 2022.2.21.]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, 대응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6.3.1., 2022.02.21.,2025.1.23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및 인사규정에 적용받은 자로서, 본교에 재직(휴직 포함) 또는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교원(강사, 조교 포함), 직원(계약직, 용역직 포함), 학생에게 적용된다. (개정 2019.07.30.,2025.8.11)

제3조(정의) ① “인권”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.(신설 2022.02.21.)

② “인권침해”란 성희롱・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지역, 국가, 민족, 용모 등 신체 조건, 혼인 여부,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·배제·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(신설 2022.02.21.)

③ "성희롱"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우리대학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(性的) 언동(言動)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(개정 2016.3.1., 항번호변경 2022.02.21)

④ “성폭력”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,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.(항번호변경 2022.02.21.)

⑤ “사건관련인”이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.(신설 2021.03.15.,항번호변경 2022.02.21)

제4조(기관장의 책무)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고충처리절차의 마

련,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,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, 예방교육 참석,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 총장은 매년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3.1., 2022.02.21)

제2장 조직 및 위원회(장명 변경 2022.02.21.)

제5조(조직 및 업무) ① 센터에 인권/양성평등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고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16.3.1., 2022.02.21.,2025.1.23., 2025.8.11)

② 센터에는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법률자문위원은 법학박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1.03.15., 2022.02.21)

③ 센터에는 상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, 고충상담원(이하 "상담원"이라 한다)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8.10.29., 2022.02.21)

1. 고충상담원은 센터의 상주 상담원 및 직원으로 한다.(개정 2018.10.29., 2022.02.21)
2. 고충상담원은 비상근자로 인사담당 및 학생담당 부서별 직원 최소 1인으로 한다. (개정 2018.10.29.,2025.1.23)
3. 고충상담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,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.(신설 2016.3.1., 개정 2022.02.21)

④ 센터의 모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2.02.21.)
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(개정 2022.02.21.)
2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22.02.21.)
3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인 업무 관할 부서의 조사 및 처리(개정 2022.02.21.)
4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(개정 2022.02.21.)
5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업무(개정 2022.02.21.)
6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(개정 2022.02.21.)
7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 교정 교육 및 관리(개정 2022.02.21.)
8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⑤ 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3.1., 2026.2.6., 서식개정 2021.03.15., 2022.02.21)

제6조(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) ① 센터장은 매년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03.15. 조명변경 및 개정 2022.02.21)

②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 2022.02.21)
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(개정 2022.02.21.)
2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(개정 2022.02.21.)
3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(개정 2022.02.21.)
4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(개정 2022.02.21.)
5.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(개정 2022.02.21.)

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행정 보직자 및 전임교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.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 2022.02.21)

④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센터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신설 2016.3.1.,개정 2021.03.15., 2022.02.21.)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총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권/양성평등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와 인권침해, 성희롱·성폭력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조번호 변경 및 자구수정 2022.02.21., 개정 2026.2.6.)

②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센터장(위원장)을 당연직으로 하며, 운영위원회의 경우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심의위원회의 경우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원 중 외부 인권침해 및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 이상, 학생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단,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사건에만 참여한다.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 2022.02.21.,2025.8.11., 2026.2.6.)

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(조번호변경 2022.02.21., 개정 2026.2.6.)

②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·의결한다.(개정 2022.02.21., 2026.2.6.)

③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6.2.6.)

④ 위원장은 회의 및 심의·의결의 결과를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업무)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(조번호변경 2022.02.21., 항신설 2026.2.6.)

1. 센터 운영계획 수립(개정 2022.02.21., 2026.2.6.)
2. 센터 관련 규정 제·개정(개정 2026.2.6.)
3. 센터 운영 평가 및 환류(개정 2026.2.6.)
4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(개정 2024.7.24., 2026.2.6.)
5. <삭제(2025.1.23.)>

②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(신설 2026.2.6.)
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관련된 사건의 처리(신설 2026.2.6.)
2. 사안의 조사·중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징계 요청(신설 2026.2.6.)
3. 사건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(신설 2026.2.6.)
4.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(신설 2026.2.6.)

제3장 조사와 구제(장명 변경 2022.02.21.)

제10조(상담 및 고충처리 신청)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및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-1호, 제3-2호, 제4호 서식에 의한다.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)

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의 피해 신고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2.21.)

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2.21.)

제11조(상담 및 조사) ① 상담원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다.(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.,2025.8.11)

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안은 신고인이 속한 업무 관할 부서에서 조사 및 처리하며, 신고인 업무 관할 부서는 아래와 같다.(개정 2025.8.11.)

1. 교원 및 조교 업무 관할 부서 : 교무처(신설 2022.02.21.)
2. 직원 업무 관할 부서 : 사무처(신설 2022.02.21.)
3. (신설 2022.02.21., 삭제 2025.8.11)

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

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⑤ 조사 과정에서 센터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 또한,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2022.02.21)

⑥ 인권침해 및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.(신설 2016.3.1.,2022.02.21)

⑦ 인권침해 및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(신설 2016.3.1.,2022.02.21)

⑧ <신설 2018.10.29., 삭제(2021.02.21.)>)

제12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03.15.,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)

②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(개정 2022.02.21., 2026.2.6.)

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(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.)

제14조(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) ①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강사변경, 휴학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, 가해자의 사과, 피해보상, 심리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)

② 총장은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(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, 학칙에 의한 징계 처리 등)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2.21., 2026.2.6.)

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03.15.,2022.02.21.)

제15조(재심의) 사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 및 사건 관련 부서에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를 1회 요청할 수 있다.(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., 개정 2026.2.6.)

제4장 피해자 보호(장명 변경 2022.02.21.)

제16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

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(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.)

② 상담원 등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(개정 2022.02.21.)

③ 총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과 보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(휴직, 부서이동, 강사변경, 수강변경, 전과, 휴학 등)를 취할 수 있다.

제17조(피해자 보호의 원칙)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.(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.02.21.)

제18조(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)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,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(조번호변경 2022.02.21.)

②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, 피해자나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(개정 2022.02.21.)

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단,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.

④ 가해자나 가해자의 동조자가 피해자 또는 증인, 신고자에게 유형·무형의 보복이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,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(개정 2026.2.6.)

제5장 기타

제19조(경비)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7> <생략>

<38> 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6조①·③, 제9조①, 제10조①·②, 제11조①·②·③, 제14조①·②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39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,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“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”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7조제4항, 제9조제4항, 별지1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5조제1항, 제5조제1항제2호, 제9조제5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제5조제1항, 제7조제2항, 제11조제1항·제2

항, 제11조제2항제3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5항, 제7조제1항·제2항, 제8조제1항·제2항·제3항, 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, 제2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, 제12조제2항, 제14조제2항, 제15조, 제18조제4항)

[별지 제1호]

고충접수 및 처리대장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고인		고충 유형	처리결과	회신 일자	확인	
		성명	소속				담당자	센터장

※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은 대외비입니다.

[별지 제2호] (개정 2016.3.1.,2021.03.15.,2022.02.21)

고충 상담신청서

사례번호	
신 청 일	년 월 일

1. 신고인이 피해자인 경우

당사자	성명		성별	남□ 여□	분류	학생□ 직원□ 교원□ 외부인□ 기타□
	소속			학번/교번		
	연락처			E-mail		
	주소					

2.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

당사자	성명		성별	남□ 여□	분류	학생□ 직원□ 교원□ 외부인□ 기타□
	소속			학번/교번		
	연락처			E-mail		
	주소					
신청자	관계	친구□ 선후배□ 동료□ 상사□ 지도교수□ 가족□ 기타□		학번/교번		
	연락처			E-mail		
	상담신청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? 예□ 아니오□					

3. 피신고인

성명		성별	남□ 여□	분류	학생□ 직원□ 교원□ 외부인□ 기타□
소속			학번/교번		
연락처			E-mail		
주소			당사자와의 관계	연인□ 동기□ 선배□ 후배□ 지도교수□ 동료□ 상급자□ 하급자□ 모르는 사람□ 기타□	

4. 피해사실

가) 최초 발생일 :

나) 장소 :

다) 발생 횟수 : 일회성□ 반복성□ (최근 발생일 :)

라) 피해자와 피신고인간의 관계

이성친구□ 동료(학과, 부서, 동아리의 동기 및 선후배)□ 교수□ 직원□ 기타□( )

마) 피해유형(*중복가능)

음담패설 및 성적인 농담□ 외모평가 및 성적발언□ 신체적 접촉 및 추행□ 학업/업무상의 차별□

스토킹□ 기타□ (구체적인 내용 :)

바) 피해발생 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(*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경우 아래 중 하나에 체크하세요.)

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□ 말과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□

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□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□

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□ 변호사, 경찰의 도움을 구함□

기타□ (구체적으로 :)

사)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피신고인의 반응 :

아)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(*중복가능)

공간 분리□ 성희롱의 중지□ 사과 및 중재□ 규정에 따른 가해자 처벌 등□ 법적 대응□

교육을 통한 성희롱의 재발방지 조치□ 기타□ (구체적으로 :)

5. 기타

※ 위 개인정보 수집 및 민감정보 처리 등에 동의합니다. 예□ 아니오□

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피해자 / 제3자) : (서명 또는 날인)

명지전문대학 인권/양성평등센터 귀하

※ 상기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.

구분	9시	10시	11시	13시	14시	15시	16시
월							
화							
수							
목							
금							

* 상담 받고자 하는 가능한 모든 시간대에 표시해주세요.

[별지 제3-1호]

인권침해 고충신청서[교직원용]

접수일: 20 . . . 담당자: (서명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신고인</td><td></td><td>소속 부서 :
직위/직급 :</td></tr>
<tr><td>대리인:
※ 사건신고에 당사자 동의가 있었습니까? 예 ▢ 아니오 ▢</td><td>소속 부서 :
직위/직급 :</td></tr>
<tr><td>피신고인</td><td></td><td>소속 부서 :
직위/직급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고
내용</td><td colspan="2">※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(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함)</td></tr>
<tr><td>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</td><td>발생횟수 : 일회성 ▢ 반복성 ▢
최초 발생일 :
최근 발생일 :</td></tr>
<tr><td>피해 발생에 대해
신고인이 취한 반응
및 행동(* 중복선택 가능)</td><td>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▢
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 ▢
행동으로 거부 의사 나타냈음 ▢
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▢
변호사, 경찰의 도움을 구함 ▢
기타(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)</td></tr>
<tr><td>피해자의 행동에 대한
피신고인 행동 변화/ 반응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해자
요구사항
(* 중복선택 가능)</td><td colspan="2">공간 분리 ▢ 인권침해 중지 ▢ 사과 및 중재 ▢
징계 등 인사조치 ▢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 ▢
기타 (<br>)</td></tr>
<tr><td>관련 자료
첨부</td><td colspan="2">대리인 위임장, 관련 증거 등</td></tr>
</table>

※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. 예 ▢ 아니오 ▢

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)

[별지 제3-2호]

인권침해 고충신청서[학생용]

접수일: 20 . . . 담당자: (서명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신고인</td><td>대리인 :
※ 사건신고에 당사자 동의가 있었습니까? 예 ▢ 아니오 ▢</td><td>학과 :
학번 :</td></tr>
<tr><td></td><td>학과 :
학번 :</td></tr>
<tr><td>피신고인</td><td></td><td>학과 :
학번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고
내용</td><td colspan="2">※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(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함)</td></tr>
<tr><td>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</td><td>발생횟수 : 일회성 ▢ 반복성 ▢
최초 발생일 :
최근 발생일 :</td></tr>
<tr><td>피해 발생에 대해
신고인이 취한 반응
및 행동(* 중복선택 가능)</td><td>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▢
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 ▢
행동으로 거부 의사 나타냈음 ▢
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▢
변호사, 경찰의 도움을 구함 ▢
기타(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)</td></tr>
<tr><td>피해자의 행동에 대한
피신고인 행동 변화/ 반응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해자
요구사항
(* 중복선택 가능)</td><td colspan="2">공간 분리 ▢ 인권침해 중지 ▢ 사과 및 중재 ▢
징계 등 인사조치 ▢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 ▢
기타 (<br>)</td></tr>
<tr><td>관련 자료
첨부</td><td colspan="2">대리인 위임장, 관련 증거 등</td></tr>
</table>

※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. 예 ▢ 아니오 ▢

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)

[별지 제4호]

서 약 서

성 명 :

소속 부서/학과 :

본인은 본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인물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